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
2011.03.09 (수) 14:00
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 
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 
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정 현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1년 2월 25일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3월 2일

3. 제안 이유

- 우리도의 농어업·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 지원을 위해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함(안 제18조, 안 제21조~안 제24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